
전남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사업」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지원 지침

2026. 5. 8.

개정 이력

작성일	변경 및 추가내용	작성자	승인자
'24.08.14.	· 최초 작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근거로 세부 사항을 정함 · 전담 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사업 질의에 대한 답변 반영 · 장학 선발에 있어 전일제, 비전일제 구분	오희숙	전재기 사업실무교수 (검토)
'24.08.27.	· 문구 편집, 변경 내용 추적기능 적용	오희숙	엄태원 부원장 (검토)
'24.09.01.	· 학과 회의 중 문구 등 수정사항 반영 · 24학년도 2학기 종료 후 추가 장학 예산배정 시 전일제, 비전일제 장학 선발 방식 재논의 필요	오희숙	'24.08.28. 학과 회의 (검토)
'25.02.21.	· 대학회계 편성 장학금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 문구 추가	백준희	'25.02.19. 학과 회의 (검토)
'26.04.08.	· 신입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근거 및 세부 사항 추가 · 신입생 장학금에 대한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근거 문구 추가 · 장학선발 직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 수정(3.0→3.5)	구난영	'26.04.08. 학과 회의 (검토)
'26.05.08.	· (근거) 전남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장학 지침('26.04.08.), 대학원 전일제 학생 연구참여 및 학업 이행 협약서('26.04.08.) · 기존 장학 지침 내 II. 재학생 학생인건비 내용 분리하여 단독 제정	오희숙	'26.04.08., '26.05.06. 학과 회의 및 방도연 부원장, 전재기 사업실무교수 (검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재학생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지원 지침

1. 목표

- 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재학생이 학문 후속세대 정예 인력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용 지원 환경을 조성한다.
- 나. 취업을 하지 않은 전일제 재학생에 대하여 인건비성 기본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학업 및 연구 매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비전일제 대학원생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 학생인건비 최소 계상 기준인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원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지역 수요 중심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사업’ (사업기간: 2023. 04. 01. ~ 2029. 12. 31.)
- 나. 전남대학교 인재양성실 ‘CNU-BK 사업’ (사업기간: 2024. 06. 01. ~ 2027. 02. 28.)

3. 의무사항

- 가. 제2조의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학생 연구자로 참여연구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나. 전일제 재학생의 경우 선발 시 재학 기간 내, 비전일제 재학생의 경우 제2조의 연구개발 사업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참여 시 해당 기간 참여연구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 전일제 재학생은 대학원 학과회의를 통해 선발하며 ‘대학원 전일제 재학생 연구 참여 및 학업 이행 협약서’에 동의하는 경우 참여연구원 등록이 가능하다.
- 라. 참여연구원 등록 및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지원 요청 전 반드시 지도교수와 업무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학생인건비 지원

- 가. 석사학위과정생의 학생인건비 지급 한도는 월 220만원(계상률 100%)이며, 전일제 재학생으로 선발 시 월 100만원(계상률 45.5%) 이내 차등 지급하며, 비전일제 재학생은 사업 참여 기간 월 22만원(계상률 10%)을 지급한다.
- 나. 박사학위과정생의 학생인건비 지급 한도는 월 300만원(계상률 100%)이며, 전일제 재학생으로 선발 시 월 150만원(계상률 50%) 이내 차등 지급하며, 비전일제 재학생은 사업 참여 기간 월 30만원(계상률 10%)을 지급한다.
- 다. 석박사통합학위과정생의 학생인건비 지급 한도는 이수 학기(24학점 이상 이수 시 박사과정으로 간주)에 따라 석사,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라. 학위별 수료생의 경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한하여 수료 후 4학기까지 (박사과정: 5~8학기, 석박사통합과정: 9~12학기) 전일제 재학생은 월 130만원(계상률 43.3%) 이내 차등 지급하며 비전일제 재학생은 사업 참여 기간 월 30만원(계상률 10%)을 지급한다.
- 마. 단, 제3조 라 항의 지급을 위해 지급 월이 포함된 학기의 수료후등록(등록금의 8% 납부)이 완료되어야 한다.
- 바. 제2조 가 항의 학생인건비는 8.8% 세금 공제 후 지급하며, 제2조 나 항의 학생인건비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다.

5.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 가. 전일제 재학생의 경우 학위 과정 중 제2조의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기간 내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며,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연구 활동에 대한 학생인건비를 해당 월 17일 또는 말일(17일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학생 개인 계좌에 지급한다.
(예: 3월 1일 ~ 3월 31일 연구 활동 → 학생인건비 3월분 지급일은 3월 17일)
(예: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사업 참여 시 → 2027년 2월 17일이 학생인건비 지급 마지막일)
- 나. 비전일제 재학생의 경우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종료 일자가 속한 월 17일에 학생인건비 최저 계상액(10%)을 학생 개인 계좌에 지급한다.
(예: 3월 31일 ~ 4월 2일 프로그램 참여 → 4월 17일 또는 말일 학생인건비 지급)
- 다. 17일 또는 월 말일이 주말 등 휴일인 경우 이전 평일에 지급한다.
- 라. 동일한 월에 학생인건비는 17일 또는 말일로 1회만 지급한다.

[[참고 1) 학생인건비 지원]

학위 과정	대상	기간	금액(세전)
[1] 석사과정	전일제	정규 4학기(24개월)	• 월 1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비전일제	사업 프로그램 참여 기간	• 월 22만원
[2] 박사과정	전일제	정규 4학기(24개월)	• 월 150만원 이내 차등 지급
		수료 후 4학기(24개월)	• 월 130만원 이내 차등 지급
	비전일제	사업 프로그램 참여 기간	• 월 30만원
[3] 석박사 통합과정	전일제	정규 8학기(48개월)	• (석사과정) 월 1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 (박사과정) 월 150만원 이내 차등 지급
		수료 후 4학기(24개월)	• 월 130만원 이내 차등 지급
	비전일제	사업 프로그램 참여 기간	• (석사과정) 월 22만원 • (박사과정) 월 30만원
-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17일 또는 17일 지급이 어려운 경우 말일 지급(휴일인 경우 이전 평일 지급) - 위 세전 금액에서 기타소득(8.8%) 공제 후 본인 계좌 입금			

6. 연구활동비 지원

가.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는 국내·외 저널 논문 게재, 국내·외 학술 대회 및 워크숍 연구 발표, 국내·외 경진대회 등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실소요 비용을 포함한다.

나. 국내·국제 저널 논문 게재는 연간 사업 예산 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다. 국내 학술대회 및 워크숍 연구 발표, 경진대회 본선 참가 등은 전일제 재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200만원, 박사과정 400만원 이내로 학위 과정 동안 한도액을 정하여 지원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이수 학기에 따라 석사,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라. 국내 학술대회 및 워크숍 연구 발표, 경진대회 본선 참가 등은 비전일제 재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에 연간 배정된 「국제화 예산 + 연구활동비」 예산 내 지원한다.

마. 국제 학술대회 및 워크숍 연구 발표, 경진대회 본선 참가 등은 전일제, 비전일제 재학생 모두 지도교수에 연간 배정된 국제화 예산 내 지원한다.

바. 위 국제화 예산은 박사과정 재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에 배정된 국제화 예산 소진 시 학과 회의를 통해 타 전임교수의 국제화 예산과 박사과정 재학생의 국내 연구활동비 예산(제6조 다항)을 상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비전일제 재학생의 연구활동비는 증빙서류 검토를 통하여 산출된 전체 비용에서 학생인건비 10% 계상 금액(세후) 제외 후 지원한다.

[[참고 2) 연구활동비 지원]

지원 가능 목록	지원 방식	대상	내용
[1] SCIE, KCI 저널 게재	연간 선착순 지원	전일제 비전일제 외국인	- 저자 중 1인이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연구원인 경우 지원 가능 - 비전일제 및 외국인 재학생은 교신저자(지도교수)로 지원 가능
[2] 국내 학술대회, 워크숍, 경진대회(본선)	재학 학기 한도 내 지원 (박사: 수료 4학기까지)	전일제 비전일제	- 석사과정: 200만원 이내(4학기) - 박사과정: 400만원 이내(8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상 이수 시 박사과정 간주 - 지도교수별 국제화 예산: 500만원 + 연구활동비: 100만원 이내
[3] 국제 학술대회, 워크숍, 경진대회(본선)	연간 교수별 국제화 예산 한도 내 지원	전일제 비전일제	- 지도교수별 국제화 예산: 500만원 이내 - 전일제 박사과정은 지도교수의 국제화 예산 소진 시 [2]의 예산과 타 전임교수의 국제화 예산과 상계하여 국제화 프로그램 참여 가능 - 타 전임교수의 국제화 예산에서 200만원 사용 시 학생의 [2] 예산을 동일한 금액으로 감액함

7. 연구활동비 지급 방법

가. 연구활동 종료 후 ‘여비 정산 서류 및 작성요청’ 가이드 라인에 기반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가 미흡한 경우 최종 산출된 경비가 실제 소요 경비와 상이, 또는 지급이 불가할 수 있다.

나. 연구활동비 중 국내·외 여비는 연구활동 종료 후 증빙서류 검토를 통하여 산출된 전체 비용을 학생 개인 계좌에 지급한다.

<국내·외 여비: 전일제 재학생>	
출장 전 등록비를 제외한 경비 학생 개인 부담(교통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 출장 후 경비 정산	
<국내·외 여비: 비전일제 재학생>	
출장 전 경비 전체 학생 개인 부담(등록비, 교통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 출장 후 경비 정산(전체 경비 - 학생인건비 10% 계상 금액)	

다. 논문게재료(게재 관련 비용 일체),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록비(등록 관련 비용 일체), 경진대회 참가비는 행사 개최 기관으로 직접 지급을 우선으로 하며 불가한 경우 여비와 같이 증빙서류 검토를 통하여 산출된 전체 비용을 학생 개인 계좌에 지급한다.

<전일제 재학생> 논문게재료 및 등록비 등 소요 비용, 마감일, 논문 등 증빙서류 업무 담당자에 제출 ⇒ 학생 또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행사 개최 기관으로 결제
<논문 게재료: 비전일제 재학생> 소요 비용, 마감일, 논문 등 증빙서류 업무 담당자에 제출 ⇒ 학생 또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학술 기관으로 결제
<그 외 등록비: 비전일제 재학생>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록비, 경진대회 참가비는 학생 개인 부담 ⇒ 출장 후 국내·외 여비와 함께 경비 정산

8. 기타 사항

가. 매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전일제 재학생은 ‘대학원 전일제 재학생 연구 참여 및 학업 이행 협약서’를 기반으로 매 학기 초 연구계획서와 학기 초를 제외한 매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비전일제 재학생의 경우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증빙자료로 이를 대체한다.

나. 학생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 지침은 필요시 학과 회의를 통해 개정한다.

다. 재학생의 학적 상태 및 연구개발 사업 참여도에 따른 지급액 변경·중단, 배정 예산의 확대 및 축소, 지침 해석 등은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반영한다.